

[공모펀드 변경대비표]

가. 펀드명 : 유진 G-BEST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나. 변경시행일 : 2018년 4월 30일(월)

다. 변경 대상 서류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라. 변경 내용 :

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 ③ (생략)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진 G-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u><신설></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진 G-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진 G-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유진 G-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의 투자비율이 일시적으로 90% 미만일 수 있으며 이때, 하한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로 한다 <u><신설></u> <u><신설></u>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

	<u>2. (생략)</u>	<u>다.</u> <u>4. (현행과 같음)</u>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8조</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u>제18조</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u>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u>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u>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1) 투자 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u>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u>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중 '(1) 투자 전략', "2. 투자전략"	<u><신 설></u>	<u>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추가 :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신 설></u>	<u>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신탁 추가 :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u>

		권 모투자신탁(주식)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신 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모투자 신탁 추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신 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신 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추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 설>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추가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 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과 배당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中 '(1) 투자 전략', "2. 투자전략"	<신 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추가 : 유진 챔피언 배당주 증권 모 투자신탁(주식)